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9월 11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6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999년 9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개정사유

-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인력을 감축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총 정원 중 133명을 감축함(안 제2조) 1,379명 → 1,246명 ( $\Delta 9.6\%$ )
  - 집행기관 정원을 133명 감축함(1,354명 → 1,221명)
- 2) 감축되는 정원은 3년간 연차별 감축('99 ~ 2001) (부칙안 제2조)
  - 1999년 ( $\Delta 26명 19.5\%$ ), 2000년 ( $\Delta 40명 30\%$ ), 2001년 ( $\Delta 67명 50.4\%$ )
- 3) 연차별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초과 현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부칙안 제3조)
  - 1999년 감축분 : 2000년 12월 31일(별정직 2000년 6월 30일까지)
  - 2000년 감축분 : 2001년 7월 31일(별정직 2001년 1월 31일까지)
- 4)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정토록 함(부칙안 제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송성만)

동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조정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구 본청 및 의회사무국 총 정원의 9.6% 133명을 감축하여 1,246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은 1,221명, 의회사무국 25명으로 하고,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연차별로 '99년 26명, 2000년 40명, 2001년 67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2
----------	----

제출년월일 : 1999. 9. 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 사유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따라 인력을 감축 운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 2. 주요 골자

- 가. 총 정원 중 133명을 감축함(안 제2조) 1,379명 → 1,246명(△9.6%)
  - 집행기관 정원을 133명 감축함(1,345명 → 1,221명)
- 나. 감축되는 정원은 3년간 연차별 감축('99~2001) (부칙안 제2조)
  - 1999년(△26명 19.5%), 2000년(△40명 30%), 2001년(△67명 50.4%),
- 다. 연차별 감축되는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두어 초과 현원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부칙안 제3조)
  - 1999년 감축분 : 2000년 12월 31일(별정직 2000년 6월 30일)까지
  - 2000년 감축분 : 2001년 7월 31일(별정직 2001년 1월 31일)까지
- 라. 감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규정 토록 함(부칙안 제4조)

## 3. 참고 사항

- 가. 관계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2단계 지방구조조정 추진지침(조직 12200-511, '99. 6. 15)
-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다.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46명으로 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221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등 등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 표 1 ]

영등포구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5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32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 표 2 ]

영등포구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정 원
정원의 총수	1,31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8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5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6인(집행기관의 정원 26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0인(집행기관의 정원 4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7인(집행기관의 정원 67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영등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4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u>1. 집행 기관 : 1,345명</u> <u>2. 의회사무국 : 25명</u> <u>총 계 : 1,379명</u>	<u>1. 집행기관의 정원 : 1,221명</u> <u>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u>
제3조(직급별 정원의 규정) 구의 본청·구의회 사무기구·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제2조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 구본청, 구의회 사무기구, 소속기관, 동 등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9. 9. 20.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9년 2월 2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6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9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 가. 제정이유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5516호, '98. 2. 24)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955호 '98. 12. 3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